

2016년 경찰학개론 기본서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추록입니다.

아래의 페이지는 2016년 경찰학개론 기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P.27 ㉠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판결 ㉡ 변경

㉡ 경찰의 임무에서 적극적 복지경찰 요소를 배제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에 한정시키는 등의 일련의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19세기 말경에 가서야 비로소 소극목적의 위험방지에 다시 한정되었다.

↓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의해 경찰권의 발동범위가 소극적 질서유지 위험방지로 한정되는 것이 법해석상 확립되었다.

P.29 참고 - 사회목적적 작용과 국가목적적 작용 삭제

P.53 2. 내부고발의 원인과 정당화 요건 BOX안에서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만 남기고 내부고발의 원인은 삭제

P.75 백제 1. 중앙관제의 (2) 관등조직 삭제

P.75 3. 백제의 행정관제(6좌평제) 삭제

P.77 3. 군사조직 삭제

P.78 2. 군사제도 ~ 3. 5도양계 까지 삭제

P.82 직수아문 ① 위에 아래 내용추가

① 직수아문이란 각 관청이 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구금하는 권한을 말한다.

P.84 (2) 경찰작용 영역 밑의 십자표시 내용변경

갑오경장 당시에는 경찰이 담당했던 업무영역의 광범성이나 직무규정의 포괄성은 근대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찰업무와 일반행정과의 미분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

갑오경장 당시에는 경찰이 담당했던 업무영역의 광범성이나 직무규정의 포괄성은 경찰과 행정

이 제대로 분화되지 못함을 증명한다.

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통째로 삭제

P.146 참고 책임운영기관 삭제

P.147 ① 지방경찰청장 내용 변경

㉞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㉟ 지방경찰청장은 차장 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

㉞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 · 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경찰법 제14조 1항)

㉟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P.161 1. 권한의 존중관계 (2) 주관쟁의 결정 제목변경

(2) 주관쟁의 결정

↓

(2) 상호협의

P.176 ② 기간산입의 배제 ㉟ 예외 삭제

P.178 (7) 승진심사의 기준 삭제

P.191 (2) 선물신고의무 내용변경

시가가 미화로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선물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

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P.191 (3)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내용변경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205 BOX안 강등의 내용 중 ②변경

②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액

↓

② 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액함.

P.205 BOX안 정직의 내용 중 ③변경

③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2/3 감액(1/3 지급)

↓

③ 정직기간 중에 보수는 전액을 감액함.

P.215 3. 형사상 책임 삭제

P.216 4. 민사상의 배상책임 삭제

P.218 (2) 징계의 경우 ③ 삭제

P.238 (5) 적용범위 삭제

P.241 심화학습 삭제

P.256 관련 판례 삭제

P.260 관련 판례 삭제

P.268 5. 경찰상 조사, 6. 공표 모두 삭제

P.274 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 개정과정 삭제

P.279 임의동행시 고지해야 할 내용 삭제

P.296 마지막에 추가

보상금 지급

(1) 보상금 지급대상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 ②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 ③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 ㉡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 ㉢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2)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4)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두는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과장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5) 보상금 지급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P.298 II 경찰관리의 구조 모두 삭제

P.301 3.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모두 삭제

P.317 III 지출의 특례 모두 삭제하고 밑의 내용으로 대체

참고 - 문서보존연한

5년 - 비밀관련서류, 관서운영경비관련서류 3년 - 나머지 문서
--

P.319 참고 삭제

P.325 ~ P.327 법조문 삭제

P.352 ~ P.357 행정심판법 모두 삭제

P.359 3. 에찌오니의 저항의 극복전략 모두 삭제

P.362 II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모두 삭제

P.366 제3절 남북통일을 대비한 경찰활동 모두 삭제

P.370 참고 화이트칼라 범죄 삭제

P.371 참고 학문상의 범죄의 개념 삭제

P.371 2. 범죄의 원인부터 P.376 3. 범죄의 예방 전까지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
1. 개인적 수준의 범죄원인론

(1) 고전주의 범죄학

- ①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인간으로 전제
- ② 효과적 범죄통제를 위한 엄격하고 분명하며 신속한 형벌 주장
- ③ 고전주의 범죄학은 외생변수, 동기는 불문
- ④ 일반예방주의, 의사비결정론, 객관주의
- ⑤ 효과적인 범죄예방은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

(2) 실증주의 범죄학

① 범죄원인

인간의 행위는 생물적.심리학적.사회적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② 이탈리아 실증학파

㉠ 롬부로조

롬부로조는 '범죄인'을 저술하여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 페리

페리는 '범죄사회학'을 저술하여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 갈로팔로

갈로팔로는 '범죄학'을 저술하여 자연범과 법정범을 구별하였다.

③ 특징

㉠ 범죄는 자유의지가 아닌 외적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

㉔ 기존의 형벌과 제도로는 범죄통제가 불가능하다.

2.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론

(1) 사회구조원인

이론	내용
사회해체론	<p>① Show & Macay가 주장한 범죄원인론이다.</p> <p>② 범죄의 원인이 산업화.도시화 ⇨ 사회해체 ⇨ 사회통제의 약화 ⇨ 일탈의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다고 본다.</p> <p>③ 도시의 특정지역에서 범죄가 일반화되는 이유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사회의 해체현상에 따른 것으로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 본 개념이다.</p> <p>④ 전통적인 사회통제기관들이 통제력을 상실하면 반사회적 가치를 옹호하는 범죄문화가 형성되고 계승됨으로써 해당지역에는 높은 범죄율이 유지된다.</p>
문화적 전파이론	<p>① 범죄라는 고유한 문화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이론이다.</p> <p>② 이러한 비행지역은 그 지역의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계속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때문에 비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p> <p>③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범죄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p> <p>④ 범죄에 대한 구조적.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p>
아노미이론	<p>①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의 간극이 커지면서 아노미 조건이 유발되어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초래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를 선택하여 범죄가 발생한다.</p> <p>② 뒤르켐(Durkheim)은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 하면서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p> <p>③ 범죄정상설과 범죄필요설은 범죄는 정상적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고 본다.</p>
하위문화이론	<p>① Cohen이 제시한 사회구조원인에 따른 범죄원인론이다.</p> <p>②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와 수단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문화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p>
문화갈등이론	<p>① 셀린(Sellin)이 '문화갈등과 범죄'라는 저서를 통하여 주장한 이론이다.</p> <p>② 범죄는 문화의 갈등을 통한 심리적 갈등에 의해 발생한다.</p>

(2) 사회과정원인

① 사회학습이론

이론	내용
분화적 (차별적) 접촉이론	<p>①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가 주장한 범죄원인론이다.</p> <p>② 특정한 개인이 범죄문화에 접촉, 참가, 동조함으로써 범죄행동이 학습되어 범죄가 발생한다.</p> <p>③ 범죄의 원인을 물리적 환경, 범행의 기회로 본다.</p>
차별적	<p>① Glaser가 제시한 사회과정원인에 따른 범죄원인론이다.</p>

동일시이론	②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여 범죄를 학습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차별적 강화이론	① Burgess & Akers가 제시한 사회과정원인에 따른 범죄원인론이다. ② 청소년들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을 받게 되면 비행행위가 강화되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는 이론이다.
중화기술 이론	① D. Matza & G. M. Sykes가 주장한 범죄원인론이다. ②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마비)시킴으로서 범죄에 이른다라는 이론이다. ③ 중화기술의 방법 - 책임의 회피, 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② 사회통제이론

이론	내용
견제이론	① Reckless가 제시한 사회과정원인에 따른 범죄원인론이다. ② 견제이론은 사회통제이론의 일종으로 좋은 자아관념은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동조성 전념이론	① Briar & Piliavin이 제시한 사회과정원인에 따른 범죄원인론이다. ② 사람들은 행위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유혹에 노출되며 노출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고 범죄를 행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처벌의 두려움, 자신의 이미지, 사회에서의 지위와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염려하는 동조성에 대한 전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이다. ③ 동조성에 대한 전념은 부모나 선생님 등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얻어지게 된다.
사회적 유대이론	① 허쉬(Hirschi)가 발표한 사회통제이론이다. ② 사람은 일탈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유대가 약해지면 일탈의 가능성이 범죄로 발현된다. ③ 허쉬는 비행을 억제하는 사회적 요소로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③ 낙인이론

- ㉠ 범죄를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회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 ㉡ 범죄원인론보다 범죄 그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
- ㉢ 범죄의 원인을 사법당국의 낙인(烙印) 때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P.383 5. 생활안전경찰의 평가기준 삭제

P.384 (3) 지역경찰의 개념정리 삭제

P.386 2. 지역경찰의 동원 BOX안 사유 삭제

P.393 (3) 일일근무 지정시 고려사항, (4) 치안센터 전담근무자 삭제

P.396 (3) 순찰의 기능 삭제

P.397 5. 순찰노선에 의한 순찰의 종류 삭제

P.399 (4) 근거규정, 3. 경찰방문대상, 5. 경찰방문방법 삭제

P.400 8. 보고 삭제

P.406 (6)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②,③삭제

P.407 2. 음란행위 삭제

P.414 핵심다지기 연소자출입관련 내용 삭제

P.423 참고 삭제

P.426 2. 경찰의 단속에 나타난 기초질서 위반의 주요유형 삭제

P.428 2. 경범죄처벌법과 형법과의 관계 ⑥ 변경

⑥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

⑥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2018년 1월7일 부터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가능)

P.428 3. 경범죄처벌법과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삭제

P.435 2. 청구의 방식 삭제

P.436 (3) 피고인의 출석, (4) 불출석심판청구서 접수 삭제

P.436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의 벌칙에 대한 유예제도 ① 변경

① 집행유예 - 벌금, 구류, 과료에 대해 모두 불인정

↓

① 집행유예 - 벌금, 구류, 과료에 대해 모두 불인정(2018년 1월7일 부터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가능)

P.437 (4) 형의 집행 삭제

P.439 2. 가두선도 · 상담선도 후의 조치사항 삭제

P.441 2. 정보시스템의 운영 ③, ④ 삭제

P.441 BOX안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산의 ④ 변사자 · 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 삭제

P.442 5.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BOX안 신원불상자 삭제

P.443 7. 실종아동찾기센터 (2) 업무 삭제

P.443 8. 장기실종아동 추적팀 (2) 업무 삭제

P.443 9.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 ② 삭제

P.444 10.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②, ③, ⑤ 삭제

P.444 12. 아동등 지문 등 정보의 사전등록 및 관리 ① 변경

①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①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한다.

P.444 13. 실종아동등의 위치정보요청에 대한 결재권자 삭제

P.445 14. 가출인의 신고접수 ②, ③ 삭제

P.445 15. 초동조치 ② 변경

② 단,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탐문·수색의 생략 가능하다.

↓

② 다만, 경찰관서장이 판단하여 수색의 실익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탐문·수색을 생략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P.450 (6) 장물의 습득 삭제

P.451 관련판례 삭제

P.468 IV 고소 · 고발 · 진정 · 탄원(수사민원사건)의 처리 삭제

P.472 (3) 초동조치 요령 ③, ④삭제

P.473 (2) 임시조치의 청구 ①, ②변경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①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①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P.473 (3) 긴급임시조치 ① 변경

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P.474 8. 피해자보호명령 삭제

P.489 3. 경비계획 삭제

P.492 2. 경비범죄

P.501 1. 전 경찰관 비상근무체제로의 전환과 근무강화 내용변경

(1) 경계강화기간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2일 전까지

(2) 선거일 2일 전부터 개표종료시까지(갑호 비상)

선거 당시의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비상구분 및 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

(1) 경계강화기간

선거운동 개시 전일부터 선거전일까지

(2)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갑호 비상)

P.513 3. 다중범죄 진압의 단계적 실행행사 삭제

P.514 4. 다중범죄진압의 단계별 조치사항

P.515 관련판례 삭제

P.525 ~ P.523 2. 세계의 주요 테러조직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

지역	테러조직
중동	Abu Nidal Organization(아부니달),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PFLP), PFLP - GC, 하마스(Hamas), 헤즈볼라(Hizballah), 검은 구월단
유럽	바스크 독립운동(ETA), 서독적군파(RAF), 북아일랜드 공화국군(PIRA), 무장 프롤레타리아조직(NAP), 붉은 여단, 프랑스의 코르시카 부흥운동, 네덜란드의 남몰루카 독립공화국, 쿠르드 노동자당, 터키의 인민해방군
아시아	일본 적군파, 타밀 타이거, NPA(필리핀 공산당의 군사조직)
아메리카	미국 민병대, 아르헨티나의 인민혁명군, 우루과이의 투빠마로스

P.524 5.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삭제

P.525 6. 사건발생시 초동조치요령 삭제

P.530 참고 경찰비상업무규칙상 용어정리 BOX안의 필수요원과 가용경력 교체

필수요원 - 전 경찰관 및 일반 · 별정 · 기능직 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

가용경력 - 총원에서 병가 · 휴가 · 출장 · 교육 ·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

↓

필수요원 - 전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

가용경력 - 총원에서 휴가 · 출장 · 교육 ·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

P.535 2. 주군인경찰 삭제

P.539 (2) 교통경찰의 임무 BOX안 교통정리 경찰의 임무 삭제

P.555 심화학습 위드마크공식 삭제

P.561 (4) 교차로 · 교차로 부근 외에서의 진로양보 내용 밑에 추가

(5) 경광등이나 사이렌의 작동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563 (2) 교통정리의 원칙 삭제

P.564 (4) 교통법규위반 단속시 현장조치 삭제

P.572 BOX안 1종 대형면허 ㉠ 변경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P.572 BOX안 1종 보통면허 ㉡ 변경

㉡ 총 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

㉡ 총 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P.572 BOX안 1종 특수면허 아래의 내용으로 변경

㉠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③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P.572 BOX안 2종 보통면허 ③ 변경

③ 총 중량 3.5t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

③ 총 중량 3.5t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P.573 4.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③ 변경

③ 듣지 못하는 사람(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③ 듣지 못하는 사람(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P.574 (2) 공동위험행위 제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2) 공동위험행위(무면허로 공동위험행위를 한 경우 포함)

P.574 (3) 음주운전 제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3) 음주운전(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포함)

P.575 (8)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위에 추가

(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시험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각각 무효로 처리한다.

② ①에 따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P.588 (1) 정보의 의의 내용 중 ①, ③ 삭제

P.592 2. 자료, 첩보, 정보의 비교 삭제

P.604 (2) 정보요구의 형태 삭제

P.613 (1) 신원조사기관 삭제

P.613 6. 조사결과의 처리 삭제

P.616 BOX안 주최자 ☹ 삭제

P.617 1. 사전신고제 (1) 옥외집회 · 시위에 있어서 신고 내용 중 ①, ② 사이에 아래의 내용 추가

② 주최자는 ①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617 (4) 시간과 장소가 경합하는 2이상의 신고 ①, ②, ③, ④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① 분할개최 권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 신고자의 신고금지

관할 경찰관서장은 ①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임의적).

③ 선 신고자의 집회사실 통지

②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의무적).

④ 신고된 집회의 미개최 신고

㉠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무적).

㉡ ㉠의 의무를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619 2. 시간과 장소가 경합하는 2 이상의 신고 삭제

- P.628 2. 스멜서의 부가가치접근이론 삭제
- P.629 3. 학생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삭제
- P.643 4. 보안(정보)사범의 특성 삭제
- P.650 (2) 통일전선사업부의 외곽단체 삭제
- P.658 3. 공작의 분류 삭제
- P.659 5. 비밀공작망의 형태 삭제
- P.661 7. 차단 삭제
- P.662 관찰묘사와 사전정찰 삭제, 감시 삭제
- P.678 (4) 행위태양 삭제
- P.679 (1) 이적동조 등 ㉓ 판례가 이적동조 등으로 인정한 사례 삭제
- P.694 1. 국제질서에 관한 이론 삭제
- P.696 (2) 외사경찰의 중요성 삭제
- P.697 2. 외사신원조사의 대상 삭제
- P.698 1. 국제성 범죄 (2) 유형 삭제
- P.703 ㉓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국제관행 삭제
- P.704 (4)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㉒,㉓ 삭제
- P.705 (6) 여권분실자의 여권유효기간 삭제
- P.706 (3) 사증의 종류 삭제
- P.725 2.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 삭제
- P.727 참고 적색수배서의 요청기준 삭제
- P.737 가장 아래에 추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발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신청)

②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P.740 사이버범죄 대응기관 삭제

- 수고하셨습니다 -